

| 제3차 충남사회적경제 콜로키움 |

■ 발 표

#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관계 및 발전 방향

최 혁 진 본부장  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
기반조성본부



#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관계 및 발전방향

2012. 5. 4.

최혁진(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반조성본부장)



## 기존 협동조합법의 문제점과 운영사례(원주지역)가 주는 시사점

### 〇 **협동조합 설립 자체의 어려움**

- 8개 개별법 체계로 되어 있어 해당분야의 사업이 아니면 협동조합 설립이 불가능
- 소규모 협동조합이나 노동자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설립자체가 불가능하였으며 기존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 설립인가도 각종 규제로 인하여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이 현실

## 기존 협동조합법의 문제점과 운영사례(원주지역)가 주는 시사점



### ○ “이종간 협동조합의 연합회 결성이 불가능”

- 기본법 또는 일반법이 없었기에 이종 협동조합간 사업 연합 구성은 불가능하였으며 이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협동조합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 제도적 장애요인이 되어 왔음

## 기존 협동조합법의 문제점과 운영사례(원주지역)가 주는 시사점



### ○ “원주지역 협동조합운동의 대응”

- 법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 조직을 설립하여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  
(법과 운영체계의 불일치로 인하여 상시적인 불안정성의 문제 발생)
- 이종 협동조합간 연합회 구성이 불가능하여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라는 임의단체를 통해 연합사업 추진  
(법 제도 상의 문제로 사업확대에 한계)

## 기존 협동조합법의 문제점과 운영사례(원주지역)가 주는 시사점



### “ 원주지역 협동조합운동의 대응 ”

-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20여개 사업체가 각각 협동조합, 상법상 회사, 비영리 조직 등 다양한 법인형태를 취함으로써 구성원의 정체성과 비전을 공유하기가 쉽지 않았고 또한 사업추진을 위해 네트워크를 법인화하는데에도 어려움을 겪었음
-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상법상의 회사나 비영리 조직들이 협동조합법인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으며 장차 사업연합 등을 구성하여 보다 적극적인 사업확대를 준비하고 있음

##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배경



-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맞이하여 국제사회의 흐름과 요구에 발맞추어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추진

- 2008년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전 세계적인 경제불안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와 함께 건강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. 이러한 현실에 주목하여 UN은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정하고 각 나라의 협동조합에 대한 제도환경 개선을 권고하였음

- 글로벌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고용불안과 실업문제, 고령화, 만성적인 경기불안, 양극화 등의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정부나 영리기업 위주의 시장의 힘에만 의존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현실인식 반영

##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배경

- (예비)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진입지원사업(자활공동체, 마을기업, 청년사회적기업가 양성사업 등)이 선택가능한 법인격 보장
- 복지 및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(사회적협동조합)
- 저임금, 불안정 고용 상태의 근로자들의 고용조건 개선 (노동자협동조합)
- 협동조합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협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보장

## 협동조합기본법의 전망과 기대효과

- **“ 시민자본의 사회화를 통한 지역발전의 새로운 비전 창출 ”**
  -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민자본이 협동조합을 통해 사회적 자본으로 재구성
  - 시민출자를 통한 장농자본의 사회화
  - 지역사회 인적 역량이 확대
  - 새로운 공익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

## 협동조합기본법의 전망과 기대효과

### ○ “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내실화”

- 사회통합, 지역재생, 일자리창출,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어온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보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 활성화될 것
- (예비)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진입지원사업(자활공동체, 마을기업 지원사업, 청년사회적기업가 양성사업 등)들이 협동조합기본법을 통해 공신력 있는 법인격 획득이 가능
- 법인격 자체에 공신력이 높아짐으로써 시민출자, 지역사회기부, 공공사업 참여 등에서 보다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여 경영역량이 강화될 것

## 협동조합기본법의 전망과 기대효과

### ○ “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내실화”

-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들은 연합회 구성이 가능하여 서로 다른 지원체계 속에서 설립된 다양한 유사조직들(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자활공동체 등)이 필요에 따라 사업연합 구성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낼 수 있음
- 따라서 사회적기업 등의 조직들이 정부의 재정의존도에서 탈피하여 시장경쟁력과 자립역량을 높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

### ○ “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”

- 협동조합 방식의 소자본 공동창업자들의 경우 일반적인 개인창업자에 비하여 창업 성공률이 높아 그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 발생
- 해외 사례를 보면 협동조합 창업이 활성화되면 지방세수가 증가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이 강화되는 부대효과가 발생

### ○ “협동조합을 지역의 중요한 경제주체로 인정할 것”

- 협동조합은 일반 영리기업과 운영시스템, 소유구조 및 분배구조가 다른 독특한 체계를 지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대단히 효과적인 경제조직이라는 것을 지방정부가 인정해야 함
- 현재 전 세계 매출 상위 300개 협동조합들의 1년 매출 총액은 1조 4000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, 오늘날 협동조합에서 일자리를 제공받거나 협동조합의 생산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10억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

### ○ “협동조합을 지역의 중요한 경제주체로 인정할 것”

- 특히 이탈리아, 영국, 프랑스, 스페인, 캐나다 등에서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있어 상당한 경제사회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
- 따라서 지방정부는 협동조합의 활성화가 지역경제의 강화에 대단히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협동조합은 상당한 역량을 지닌 경제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해야 함

### ○ “특별한 지원·육성정책 NO! 역차별을 없애는 방향 YES!”

\* 공정한 생태계 조성

- 협동조합은 자조, 자립, 자율을 지향하는 민간의 경제조직으로 정부가 별도의 지원제도나 육성정책을 통해 차별화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는 없음
- 오히려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일반 영리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오면서 협동조합이 시장에 진입하려면 상당히 많은 장벽이 존재할 것이기에 이러한 역차별을 없애나감으로써 협동조합도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판단됨

##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

### ○ “특별한 지원·육성정책 NO! 역차별을 없애는 방향 YES!”

\* 공정한 생태계 조성

- 공동소유 및 배분체계의 제한, 공익성의 실현 등에 대한 일정한 과세혜택(스페인, 이탈리아 등) 외에는 일반적인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동일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
- 다만 이러한 제도적 환경과 인프라가 충분하게 조성될 때까지 지방정부가 교육, 홍보 및 금융 등의 간접적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

##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

### ○ “명확한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파트너십을 가져야”

- 협동조합은 지역복지 혁신과 사회통합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로써 정부의 효과적인 조력자가 될 수 있음
- 이를 위해 협동조합 진영과 안정적인 의사소통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효과를 높여낼 수 있음

### ○ “일반현황”

- 2011년 말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 644개, 예비사회적기업 약 1200개
- 전체 조직의 40%가 상법상 회사, 60%가 비영리 조직
- 기업당 유급근로자 수는 23.7명

### ○ “지원정책현황”

- 세제혜택
  - 법인세 감면(50%) 혜택
  - 중소기업 수준의 최저한세 적용
  -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민간기업의 경우 소득 10% 범위 내에서 기부금 손금산입 인정
- 경영 컨설팅
  - 3년간 총 2천만원, 연간 1천만원 범위의 경영컨설팅 비용 제공
- 전문인력 채용지원
  - 전략기획, 마케팅 전문가 등 전문인력 채용시 기업당 3명까지 1인당 최대 월 150만원 지원

### ○ 『지원정책현황』

#### - 금융

- 미소금융 (100억 규모), 중소기업청 창업자금 (100억 원)
- 신용보증재단 보증에 의한 대부 (약 350억 규모)

#### - 사회적일자리

-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인건비(1인당 월 903천원)와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지원
- 예비사회적기업 2년, 인증사회적기업 3년 등 최대 5년간 연차별 차등 지원

#### - 네트워크 구축

- 업종별, 지역별, 전국단위별 네트워크 상화를 위한 지원사업 실시

### ○ 『지원정책현황』

#### - 기타

-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사업 지원
- 사회적기업가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
- 홍보 및 판매촉진 지원
- 사업개발비 지원 (사회적기업 당 최대 7000만원 까지)

### ○ “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현황”

#### - 소셜벤처 경연대회

- 소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성장 시켜내기 위한 프로그램
- 고등학생도 참여 가능하며 권역별 예선을 거쳐 전국단위 대회 개최
- 입상자에게 창업준비를 위한 시상금 지급과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인큐베이팅 센터 입주기회가 주어짐

#### -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

- 사회적기업가를 꿈꾸고 있는 청년들에게 창업기회를 제공하는 사업
- 연간 320개 팀을 선발하고 각 팀 당 최대 3000만원까지 창업비용을 지원

### ○ “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”

#### -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

- 광역 자치단체별로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단체들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
-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참여기회를 제공
- 1개소 당 최대 3000만원까지 사업개발비 지원
-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참여기회 제공

### ○ “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구축현황 ”

-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운영
  - 광역시·도 별로 사회적기업, 마을기업 통합지원기관을 설치·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 설립지원 및 다양한 경영지원 프로그램을 연계
- 특화지원기관 운영
  - 종교계 등의 사회적기업 참여를 촉진하고 프로보노의 양성을 위한 별도의 특화지원기관을 설치·운영하고 있음(2012년 4개소)

### ○ “ 사회적기업 생태계 구축으로 정책기조 변화 ”

- 정부의 직접지원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정부재정 의존을 높이고 자립역량을 약화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
- 이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방식을 확대하는 것보다 일반 영리기업이나 비영리 단체와 차별 없이 다양한 비즈니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환경을 개선하고 사회문화적 여건을 조성하여 자립적인 성장이 가능한 생태계 구축으로 정책방향전환
- 정책기조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지원법 등 각종 관련법을 개정하여 사회적기업의 진입장벽을 없애고 정부의 재정일자리 사업에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허용하였으며, 공공조달과 금융지원 체계를 재정비하여 시장환경을 개선하였음

### ○ “유사사업 통합지원체계 및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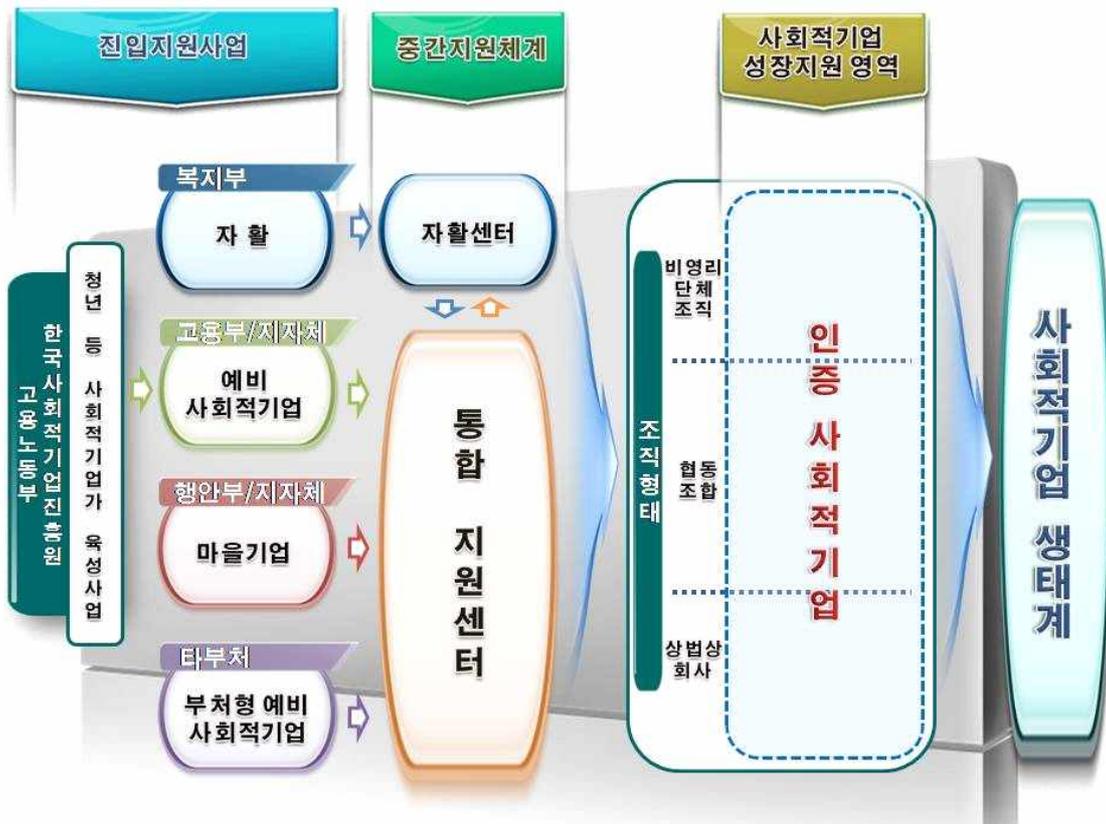
- 정부 각 부처별로 시행되었던 유사 지원사업(자활지원, 마을기업, 농어촌공동체회사 등)을 큰 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통합하고 각 사업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자 정부지원의 중간지원체계(권역별 지원기관)를 통합 운영하게 되었음
- 사회적기업의 개념을 확대(지역사회 기여형 신설)하고 부처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정부부처간 유사사업의 통합연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

### ○ “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안정적인 법인격 보장”

- 협동조합기본법 제정과 이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이 선택 가능한 법인격을 구체적으로 제도화 하였음
- 이로 인해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협동조합간 연합이 법적으로 가능해져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들이 사업연합을 통해 자립역량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환경이 조성되었음

## “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”

-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사회문화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시민사회단체의 주도 하에 추진 중
- 정부, 종교계, NGO, NPO, 봉사단체, 공공기관, 민간기업, 학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국 네트워크와 광역시·도별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 네트워크 및 10여 개 광역시·도 네트워크가 출범하여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활동 중



### ○ 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망 ”

-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되고 5년이 지나면서 정부와 민간 모두가 다양한 시행착오 및 연구사업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과제를 도출
- 2011년 정부정책의 전반적인 변화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인해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위한 제도적 환경은 보다 안정적으로 조성되었음
-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시장경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 및 그로 인한 성장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
-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은 사회적기업에게 안정적인 법인격을 제공하여 대외적 신뢰도를 높여내는 효과가 발생하여 사회적기업의 양적·질적 성장을 촉발시켜 낼 것임
- 또한 전국 단위의 민관협력체계가 확장되는 가운데 사회적기업을 위한 시장환경은 빠른 속도로 개선될 것이며 이는 사회적기업의 자립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